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52

제 목 최초요양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표이사 A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4. 8. 19. 부터 같은해 10. 30.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수행된 ○○ 구조·수색작업(이하 “이 사건 수색작업”라 한다) 현장에서 잠수하여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하여 같은 해 11. 10. 상병명 “양측 어깨 상 환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2015. 6. 29.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5. 10. 27.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① ▲▲청으로부터 2014. 5. 26.자 △△사고 관련 국가의 수난구조 중사명령을 받아 잠수사인 재해자를 투입하여 이 사건 수색작업을 수행한 점, ② 구 「수난구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해자의 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이 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 관련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선박구난 및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청구인은 ▲▲청장으로부터 2014. 5. 2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고¹⁾ 관련 수중 실종자 수색’ 업무를 위한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수색·구조 작업지시서”(이하 “작업지시서”라 한다) ‘II. 작업수행 지침서’의 ‘마. 보험가입’ 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잠수작업 인원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재해자가 체결²⁾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은 98만 원으로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재해자는 청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1) 2014. 4. 16. ▷▷주식회사의 ►►발 ▽▽행 연안 여객선(○○)이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 발생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재해자의 업무 개시일인 2014. 8. 19.에서 같은 해 9. 27.로 수정됨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 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수난구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조본부³⁾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수난구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 지방▲▲청, ▲▲서에 각각 ◁◁구조본부, ◀◀구조본부, ◇◇구조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선박구난 및 해체업 등을 영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으로부터 받은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 관련 작업지시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잠수작업 인원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는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속관계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기로 한 점, ④ 재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발주자(▲▲청장)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수색작업 현장의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3 . 1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3.~7. (생략)

○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

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나. (생략)

4. 가구 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 ③ (생략)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보험가입자) ①~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⑦ (생략)

□ 「수난구조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